

者인 都·小賣業者 1人 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人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委員會의 審議事項과 委員會의 構成에 대하여 改正된 上位法令에 맞게 改正補完하려는 것으로 우리 委員會에서는 신중한 審査를 거쳐 同 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습니다.

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소매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도·소매업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도·소매업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의 개설허가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4. 기타 서울특별시도·소매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서울특

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1인이상”을 “2인이상”으로 한다.

1. 서울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서울特別市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朴一男議員 外 10人 發議)

(16時 2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朴一男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一男議員 民主黨 所屬 生活環境委員會 朴一男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제가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18條에 의하여 제가 提案하고 10人의 同僚議員의 發議로 95年 9月 20日에 提出되어 지난 10月 20日 第1次 生活環境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은 후 우리 委員會 意見과 執行部의 意見을 參考하여 충분한 質疑와 答辯을 거쳐 신중히 審査한 結果, 提出된 改正條例案의 內容을 修正하여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습니다.

그러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한 우리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條例案 改正趣旨은 上水源保護區域의 環境保全型 農業을 育成支援함에 있어서 生産과 販賣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專門家를 중심으로 環境保全型農業育成支援市民委員會를 構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同 改正條例案에서는 第1條에서 環境保全型 農業育成을 위한 市民委員會 구성근거를 두고, 第8條를 新設하여 委員會를 10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도록 하였으나, 委員會의 意見과